

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·인수서

1. 인계자

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전화번호

2. 인수자(정당, 공익법인, 사회복지시설)

기관명	직 위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전화번호

3. 인계 · 인수사항

인계 · 인수금액	인계 · 인수방법

「정치자금법」 제58조제1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후원회의 후원금 또는 정당의 지원금으로 기탁금을 납부하거나 선거비용을 지출하여 반환·보전받은 비용 중 후보자 자산을 공제한 금액을 위와 같이 인계·인수합니다.

일
월
년

인계자 후 보 자 ○○○ (인)

인수자 { ○ ○ 당 회 계 책 임 자 ○ ○ ○ (인) —
 ○ ○ (공익법인) 대 표 자 ○ ○ ○ 직인 —
 ○ ○ (사회복지시설) 대표자 ○ ○ ○ 직인 —

주

1. 인계·인수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계·인수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합니다.
2. 인계금액은 계좌이체 또는 수표발행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인계하여야 합니다.